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2. 16(금) 10:00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
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85호
- 나. 제 출 자 : 이인식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2. 제안이유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의무 및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(안 제9조 신설)
- 나.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(안 제11조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제3조 및 제3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4. 2. 5. ~ 2024. 2. 13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(안 제9조 신설)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.

2)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(안 제11조 신설)
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신분보장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
[시행 2023. 3. 28.] [법률 제19296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,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

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